

3.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064호 1999. 12. 2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정비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9년말로 종료되는 동 사업의 시행기간을 5년간 연장함.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자에 한하여”를 “자에 한하여 순위에 따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대통령령”을 “제1순위 : 대통령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대통령령”을 “제2순위 : 대통령령”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대

통령령”을 “제3순위 :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순위 :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

제12조제1항중 “사용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 제44조제2항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지구에 사용하고 수입금을 다른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사용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등이 주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승인공고로 용도가 확정된 토지는 제외한다.

제13조제1항중 “국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국고 또는”을 “국고나”로, “국민주택기금”을 “국민주택기금 또는 지방재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법률 제4115호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입시조치법 부칙 제1항중 “1999년

12월 31일까지”를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장되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기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주택공급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를 최초로 지구부터 적용한다.